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
- 나. 제출자 : 마포구청장

##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1월 18일

## **4.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151호 2009. 7. 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 7. 30 행정안전부 훈령 제15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조문을 신설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건전한 단체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1) 안 제2조(용어의 정의)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사회단체”로 정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경비를 “사업비”로 정의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 경상적 경비를 “운영비”로 정의

(2)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 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되 “단, 기본적인 경비는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신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급단체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신설하여 보조금 운영의 대상 및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규정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조대상 단체의 지원대상 기준에 있어 5개의 호를 신설하여

“제1호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제2호는 친목 도모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제4호는 최근 1년 이상 마포구 관내에서 공익 활동실적이 있을 것

제5호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 5개호에 모두 부합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규정

(3)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있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를 제1항에 삽입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이 되어야 하고 당연직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주민생활국장 1인”으로 위촉직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원은 “3명”에서 “2명”으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중에서는 “5명”을 “4명”으로 각 1명을 감축

(4)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을 “분기별”에서 “단위사업별”로 교부방법을 개정

##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개념을 명문화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감축하여 운영하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직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던 것을 3분의 1 이내로 하여 상대적으로 위촉직 위원이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지급단체와 비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간결한 문구와 단어로 정비하였으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